

IGSE 국제교육원 규정

2017.05.01.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교육원은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부속 국제교육원(IGSE Global Education Center, 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교육원은 외국인 및 재외동포를 유치하여 한국어 강의 및 외국어 강의, 교재개발 프로그램,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개설 및 운영하고, 기타 국제화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그 설립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교육원은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안에 둔다.

제4조(사업) 교육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언어지도 및 교사 교육 단기 프로그램
2. 교재개발 단기 프로그램
3. 외국어 교육
4. 언어교육 교재 및 기타 출판물 간행
5. 언어연구 및 언어교육과 관련된 학술행사 개최
6. 본교의 국제화 향상 관련 사업
7. 기타 본 교육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및 역할

제5조(원장) ① 교육원에는 원장을 두며 교직원 중에서 총장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6조(팀장) ① 교육원에는 팀장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교육원 행정업무를 총괄하며 원장을 보좌한다.
② 팀장은 교육원 직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7조(교직원) ① 교육원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약간 명의 교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교원 및 직원의 채용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본교 관련 규정에 따른다.
- ③ 교원 및 직원의 연봉책정 기준은 본교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제8조(강사)** ① 교육원의 각 과정별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강사관리, 학생지도, 강의 등을 담당하기 위한 코디네이터를 둘 수 있다.
- ② 각 과정별로 강의를 담당하는 시간강사를 둘 수 있다.
 - ③ 시간강의료 지급 기준은 기본적으로 IGSE교육원 규정을 따르며 예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 기안에 따른다.

제3장 운영위원회

- 제9조(구성)** ① 본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제10조(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 및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업무담당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장 회계

제13조(회계연도) 교육원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예산 및 결산) ① 원장은 매년 다음 회계연도 예산서를 작성하여 2월까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1항에 따라 예산 편성 시 해당연도의 사업결과 보고서 및 예산집행 상황을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15조(수입원) 교육원 운영 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수강료
2. 기타 수입

제16조(회계집행) 교육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제반사항은 본교 재무회계규정에 따른다.

제5장 보칙

제17조(세부사항) 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